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통합〉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06621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통합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통합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심의·조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성한다.</u> ③ <u>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원계획 수립,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임¹⁾.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0조²⁾에 따라 2015년 12월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 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행정 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임.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³⁾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8.>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여성가족부차관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비교]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근거조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소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
임기	2년	2년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경찰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기 능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 타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7회, 청소년정책위원회는 17회 개최하였음⁴⁾.

< 최근 5년간 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 >

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2020년	2회	3회
2021년	2회	4회
2022년	2회	4회
2023년	1회	3회, 실무위원회 1회
2024년	없음	3회, 실무위원회 1회
계	7회	17회, 실무위원회 2회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가족부장관임에도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보다 빈번하게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복지 및 활동 분야 등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만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보다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통합한다면 두 위원회 간 중복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4) 위원회별 회의 개최일 및 회의 주제는 참고자료 참조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방안(2021년 9월, 10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2022년 12월)을 채택하여 논의한바 있음.

한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심의하도록 할 경우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연 도	개최일	내 용
2020년	7.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이행 점검 등
	12. 22.	학교 밖 청소년 추계 및 2020년 주요 정책성과 등
2021년	7. 12.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현황 및 계획
	12. 2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및 2022년 주요 개선 계획
2022년	7.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
	12.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2023년	9. 11.~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이행점검,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4년	-	개최실적 없음

자료: 여성가족부

< 최근 5년간 청소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연 도	개최일	내 용
2020년	2. 2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7. 20.	-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담당관’ 등 지정·운영 계획(안) 등 2건 - 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계획(안) 등 3건
	7. 30.	-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담당관’ 등 지정·운영 계획(안) - 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계획(안)
2021년	4. 2.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청소년특별회의 2020년 운영결과 및 2021년 추진계획
	4. 15.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청소년특별회의 2020년 운영결과 및 2021년 추진계획

	9. 28.	-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방안
	10. 13.	-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방안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22년	4. 20.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등
	4. 29.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등 3건
	6. 22.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
	12.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등 5건
2023년	2. 14.~16. (실무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23~'27) 등 2건
	2. 22.~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23~'27)
	5. 2.~4.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6. 21.~23.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2년 이행실적 및 2023년 시행계획
2024년	2. 19.~20. (실무위)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지원 방안 등 2건
	2월 27.~29.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지원 방안 등 2건
	5. 29.~3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23년 이행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
	12 23.~26.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

자료: 여성가족부